

2026년도 제3회 공무원 ·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8월 19일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 · 외국인청장

1. 채용예정 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구분	성별	채용 인원	담당업무	전환 가능 업무
공무원 근로자	여	1명	(출국대기실경비 업무) - 입국불허 외국인 계호 및 출국 등에 관련한 제반 업무지원	- 자동출입국심사대 등록, 이용안내 - 출입국 심사장 질서 유지 및 보안관리 - 보호외국인 계호 및 출국 등에 관련한 제 반 업무지원
기간제 근로자	여	1명	(출국대기실경비 업무) - 입국불허 외국인 계호 및 출국 등에 관련한 제반 업무지원	- 육아휴직 대체자 (‘26.10.15.~’27.9.5.) ※채용진행 상황에 따라 근무 개시일 변경 가능

※ 최종 합격 후 기관 운영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와 전환 가능 업무 간 전환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에 동의하는 자에 한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채용 대상 직무는 여성 송환대상외국인에 대한 계호·생활관리 등으로, 남녀 고용평등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응시자격을 여성으로 한정합니다.

※ 제2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시 접수된 응시서류는 금번 채용절차에 이관하여 활용하며, 기존 기간제 분야 응시자의 별도 접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채용 조건

신분	- 공무직 근로자 :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 ※ 기타 근로조건 및 보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법무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지침」 등에 따름															
계약기간	(공무직근로자) 계약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 (기간제근로자) 계약일로부터 2027.09.05.까지															
보수	- 출국대기실경비업무 - 공통 : 월 고정급 약 266만원(세전) <전환가능 업무> - 보호경비업무 - 외국인보호분야 : 월 고정급 약294만원(세전) - 외국인출국지원분야 : 월 고정급 약231만원(세전) ※ (공통) 법정공휴일 근무 시, 1일 통상임금의 150% 지급 - 보안관리업무 - 6주기 : 월 고정급 213만원(세전) - 8주기 : 월 고정급 267만원(세전) - 야간반 : 월 고정급 228만원(세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 계약서 작성 시 임금조건 안내 예정															
근무체계(시간)	- 출국대기실경비업무 - 4주기 : 주간1-야간-휴무-휴무(또는 주간2*) * 12일 주기 순번제 근무 배정 ※ 주간1,2(08:00~20:00), 야간(20:00~익일 08:00) <전환가능 업무> - 보호경비업무(외국인보호분야) - 3개조 1주씩 주간-야간-야간 순 교대 근무(21일 주기) <table><tr><th>구분</th><th colspan="2">근로시간</th><th>휴게시간</th></tr><tr><td>주간(1주차 주5일 근무)</td><td colspan="2">08:30~17:30</td><td>1시간</td></tr><tr><td rowspan="2">야간(2,3주차 격일 근무)</td><td>평일</td><td>17:30~익일08:30</td><td>1시간 + 심야 휴식 4시간</td></tr><tr><td>토·일요일</td><td>08:30~익일08:30</td><td>2시간 + 심야 휴식 4시간</td></tr></table> * 토·일 근무는 야간 근무조가 교대로 24시간 근무	구분	근로시간		휴게시간	주간(1주차 주5일 근무)	08:30~17:30		1시간	야간(2,3주차 격일 근무)	평일	17:30~익일08:30	1시간 + 심야 휴식 4시간	토·일요일	08:30~익일08:30	2시간 + 심야 휴식 4시간
구분	근로시간		휴게시간													
주간(1주차 주5일 근무)	08:30~17:30		1시간													
야간(2,3주차 격일 근무)	평일	17:30~익일08:30	1시간 + 심야 휴식 4시간													
	토·일요일	08:30~익일08:30	2시간 + 심야 휴식 4시간													

	(외국인출국지원분야) - 주 5일(월~금), 오전반/오후반 교대근무 ※ 오전반(09:00~18:00), 오후반(12:00~21:00) ※ 항공기 운항 일정, 승객 수, 그 밖의 근무체계 변경 필요성 등 기관 특성에 따라 근무체계 및 근무시간 변경하여 운영 가능 ● 보안관리업무 - 6주기 : 오전(06~15)-오전(06~15)-오후(13~22)-오후(13~22)-휴무-휴무 - 8주기 : 주간1-조근1-휴무-주간2-조근2-야간-휴무-휴무 ※ 조근1(06:30~19:30), 주간1(12:00~21:00), 조근2(06:30~15:30), 주간2(08:00~21:00), 야간(19:00~익일 08:00) - 야간반 : 야간(22:00~익일07:00) - 휴무
근무지	● 인천공항출입국 · 외국인청

3. 응시자격 요건

□ 응시 자격(공통사항)

- 응시연령 : 면접시험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제외)
- 성별 : (출국대기실 경비업무) 공무원직(여성1), 기간제(여성1)
- 학력 : 제한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인천국제공항 보호구역 출입증규정 제23조 제1항 발급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항공보안법,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외국환거래법,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 성범죄 관련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형의 실효가 되지 아니한 자
 - 형사 사건(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처분이 미확정된 자 등

□ 우대사항(① 서류전형, ② 최종합격 및 예비합격 동점자 발생 시 적용)

- 경비·보안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최소 경력 1년 이상)
- 무도자격증 2단 이상 보유자(태권도, 검도, 유도에 한함)
 - ※ 국기원, 대한검도회, 대한유도회 발급단증에 한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취득분까지 인정)
- 외국어 능력 우수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취득한 성적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보호경비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 취업지원대상자

※법정가점 대상: ① 서류전형 ② 면접전형 ③ 최종합격 및 예비합격 동점자 발생 시 적용,
(세부사항은 하단 가점사항 표 참조)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부터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경력사항 제출 시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
- 증빙자료가 없는 자격증 및 경력사항 등은 인정하지 않음

□ 가점 사항

구분		부가 점수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법」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 별 만점의 5~10%

※ 동일 항목(법정가점)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지원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4. 시험방법 및 일정 · 장소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소정의 심사기준에 따라 서면심사
- 응시인원이 4명 이하일 경우, 자격요건 적격자 전원 통과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 초과 시에는 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4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서류전형 심사기준]

(출국대기실경비원)

① 근로자로서의 소양(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평가): 60점

② 경비·보안 관련분야 근무경력: 10점

근무경력	3년 이상	1년 6월 이상~ 3년 미만	1년 이상~ 1년6월 미만
점수	10	7	4

※ 서류전형 위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관련 분야 업무 연관성 인정 여부 결정

※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연차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함

③ 무도자격증: 10점

평가등급	4단 이상	2단~3단
점수	10	5

※ 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단일종목에 한함

④ 어학능력: 10점

평가등급 (*등급기준표)	A등급	B등급
점수	10	5

* 어학능력 등급 기준표

【 영어 】

시험	TOEIC	TEPS (NEW TEPS)	TOEFL (IBT/PBT/CBT)	FLEX	등급
점수	790점 이상	700점 (385점)이상	86점/567점/227점 이상	700점 이상	A
점수	700점 이상	600점 (327점)이상	75점/544점/211점 이상	600점 이상	B

【 중국어, 일본어 등 기타 외국어 】

시험	공통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TORFL)	프랑스어 (DELF/ DALF)	스페인어 (DELE)	독일어 (GZ)	등급
	SNULT	FLEX	신HSK	JPT	JLPT					
점수	50점 이상	650점 이상	5급 180점 이상	640점 이상	N2 100점 이상	1단계 이상	DELF B2 이상	B2 이상	GZ B2 이상	A
점수	40점 이상	550점 이상	4급 180점 이상	540점 이상	N3 100점 이상	기본단계 이상	DELF A2 이상	A2 이상	GZ A2 이상	B

※ 자체 채용 기준 등급(A·B)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우대함

※ 어학능력 점수는 제출한 성적 중 가장 유리한 상위1개 등급만 인정하며, 언어간/시험간 중복 합산하지 않음(최대10점 부여)

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자: 10점

⑥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보호 경비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10점

※ 상기 ⑤,⑥ 두 항목 중 둘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중복 가산하지 않으며 1개 항목만 인정함

⑦ 취업지원대상자

※법정가점 대상: ① 서류전형, ② 면접전형 ③ 최종합격 및 예비합격 동점자 발생 시 적용, 세부사항은 가점사항 표 참조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면접인원을 고려하여 개별면접 또는 단체면접으로 진행

[면접전형 심사기준]

※ 면접시험 평정 요소(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준용)

- ① 소통·공감 :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 ② 헌신·열정 :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 ③ 창의·혁신 :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 ④ 윤리·책임 : 공무원으로서 윤리의식과 책임성

- 면접위원이 각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함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상, 중, 하 평정 개수로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처리기준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에 있어 동점자 발생 시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취업지원대상자’를 제외한 우대사항 해당자, ③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 채용 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등록	최종합격자 발표 [채용]
'26. 8. 19.(수) ~ 8. 26.(수)	'26. 8. 24.(월) ~ 8. 26.(수)	'26. 9. 7.(월) ['26. 9. 9.(수)]	'26. 9. 14.(월) ['26. 9. 16.(수)]	'26. 9. 21.(월) ~ 9. 23.(수)	'26. 10. 6.(월) 이후 예정

○ (공고 장소)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법무부(<http://www.moj.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https://www.immigration.go.kr>) 홈페이지에 게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정,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법무부(<http://www.moj.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https://www.immigration.go.kr>) 홈페이지에 게시

○ (최종합격자(채용) 및 채용 절차안내)

- '26.10.6.(월) 이후 개별연락 및 법무부(<http://www.moj.go.kr>),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https://www.immigration.go.kr>) 홈페이지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개별 통지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 기간 : 2026. 8. 24.(월) ~ 2026. 8. 26.(수), 09:00 ~ 18:00

※ 접수 : 평일 근무시간(09:00~18:00) / 단,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

□ 접수 방법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법무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채용 게시판 등에 게재된 양식 활용
-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인터넷 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원서접수처

원서접수처	문의전화
★ 우편접수 : 인천광역시 영종구 제2터미널대로 444(운서동) 제2정부합동청사 307호,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우편번호: 22382) ★ 방문접수 : 인천국제공항 제2정부합동청사 A동 3층 307호,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	총무과 (032-740-7101)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빠른등기)**에 한하여 접수, 건물투에 “**응시원서 재중**” 표기 요청(우편 접수자의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 우편접수자는 접수여부 및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접수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6.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 서류전형 증빙자료 제출서류 총괄표(별지 서식 제1호)
-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2호)

- 이력서 1부(별지서식 제3호)
-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제4호)
-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 재직·경력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어학능력 성적증명서, 각종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5호, 동의여부를 체크하고 반드시 응시자 본인의 서명 후 제출)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6호)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별지서식 제7호)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별지서식 제8호)

□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 여야 함
 - ※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을 요하지 않는 우대요건 서류 등은 예외(경력증명서 등)
- 사본 제출 대상 서류는 면접시험 시 원본 지참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본을 함께 첨부
 - ※ 제출서류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제출되어야 하며 미제출 서류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가 미비할 경우에는 서류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7. 채용 서류의 반환 등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서식 제9호)를 작성하여 사전 연락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전에 제출한 청구서는 인정하지 않음)**
 - ※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2. 또한, 채용서류 반환 시, 특수취급우편물(등기우편 등)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구직자가 부담합니다.

3.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나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2026.10.20.(화)~2026.11.18.(수), 주말·공휴일 제외

8.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규정 제25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9. 기타 사항

1. 최종합격자에 대해 별도의 숙소 및 교통비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2. 인천국제공항 근무 특성에 따른 순환근무 실시 예정이니 이점 참고하여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3. 응시원서는 채용업무에 따라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4.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허위 기재, 기재 착오,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또는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에 전화번호(유선, 이동전화) 기재
5.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6.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발생, 채용포기,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등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시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예비합격자(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를 결정하여 공고하며, 임용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의 채용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단,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운영합니다.
7.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무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전까지 변경 공고 합니다.(변경 사유 발생 시 법무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공고)
8.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9.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032-740-71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 제1호】

서류전형 증빙자료 제출서류 총괄표

성 명	생년월일	임용예정기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 작성목록(총괄표)

목 록	제출여부
①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2호)	☐ 제출 ☐ 미제출
② 이력서 1부(별지서식 제3호)	☐ 제출 ☐ 미제출
③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제4호)	☐ 제출 ☐ 미제출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제출 ☐ 미제출
⑤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 ☐ 미제출
⑥ 어학능력 성적증명서, 각종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 ☐ 미제출
⑦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 ☐ 미제출
⑧ 저소득층 증명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 ☐ 미제출
⑨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 ☐ 미제출
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5호)	☐ 제출 ☐ 미제출
⑪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6호)	☐ 제출 ☐ 미제출
⑫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별지서식 제7호)	☐ 제출 ☐ 미제출
⑬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별지서식 제8호)	☐ 제출 ☐ 미제출

※ □에는 서류제출여부를 √하여 맨 앞장에 철하여 제출

※ 증빙서류(사본)에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 후 제출

※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집계를 사용하여 편철(견출지, 스테플러 사용금지)

붙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응시자) :

(서명)

【별지 서식 제2호】

응 시 원 서

본인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시행 2026년 제3회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 하였을 때에는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주관 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업무								(한자)
주민등록 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 해당() ☐ 해당없음
주 소	(우)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응 시 표 2026년 제3회 공무직·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업무	
성명	(한글)	(한자)		
2026년 월 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업무 : **출국대기실경비(공무직), 출국대기실경비(기간제) 업무 중 하나 기재**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 · 생년월일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 국적명 기재
 - 반드시 복수국적 여부 체크

【별지 서식 제3호】

이 력 서

공 통 사 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업무	

성 명	한 글		한자	
	병역사항	군필, 미필, 면제, 해당사항 없음		
주 소				
휴대전화	본인		가족	
E-mail				
경 력	기 간	회 사 명		담 당 업 무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자 격 사 항	취득년월일	자 격 중		발 행 처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자 기 소 개 서

성명		응시업무	
----	--	------	--

* 작성하실 때 아래 내용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1. 자기소개서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직장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2. 조직 사회 내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여 상호이익을 되도록 이끌어 낸 과거 경험에 대해 기술하여 작성합니다.
3.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 또는 자필로 작성합니다.
서명은 자필로 합니다.
(폰트는 휴먼명조, 글씨크기 13, 줄간격 160mm, 글자색 : 검정색)

※ 내용 중에 출신학교명과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신상은 밝히지 않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서명합니다.

2026. . . 작 성 자 : (서명)

【별지 서식 제5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민감정보 수집 · 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2026년도 제3회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실시하는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생년월일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별지 서식 제7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 작성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여부 -----□

2026년 월 일

성 명 :

(서 명)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별지 서식 제8호】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로 시험에 응시함에 규정제 22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인천공항출입국 · 외국인청장 귀하

【별지 서식 제9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 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에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특수취급우편물(등기우편 등)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